

#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146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1월 01일

발 의 자: 박환희, 김 경, 김규남,  
김지향, 박유진, 박춘선,  
심미경, 옥재은, 이경숙,  
이병도, 최재란, 최호정,  
허 훈 의원(13명)

## 1. 주문

-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## 2. 제안이유

-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1조  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

#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○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
○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

○ 출석 일시 : 2023.11.1.(수), 11.16(목)~17.(금), 11.20(월), 12.15(금), 12.22(금)  
〈6일〉

○ 출석 대상

## [ 서울특별시 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,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,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자

## [ 서울특별시교육청 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